##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73

발의연월일: 2024. 8. 5.

발 의 자: 황정아 · 위성곤 · 박지원

이성윤 · 장철민 · 박정현

서왕진 · 조승래 · 강준현

신정훈 • 복기왕 • 조계원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~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.

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, 독일, 영국, 캐나다,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월 250유로,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492달러를 지급하고 있음.

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아동의 복리증진 및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. 아울러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등). 법률 제 호

###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8세"를 "18세"로, "10만원을"을 "20만원을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8세"를 "18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8세"를 "18세"로 한다.

제7조제5항 중 "8세"를 "18세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"8세"를 "18세"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보호자가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 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환수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의 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	제4조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
지급액) ① 아동수당은 <u>8세</u> 미	지급액) ① <u>18세</u>
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	20만원을
지급한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5조(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	제5조(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
공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	공) ①
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	
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	
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	<u>1</u>
다)은 <u>8세</u> 미만 아동의 보호자	8세
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・	
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	
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	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	②
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	
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	
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	
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<u>8세</u>	<u>1</u> 8세
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	
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	
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	
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	

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### ③ • ④ (생 략)

- 제7조(조사·질문 등) ① ~ ④ (생 략)
  -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 장・군수・구청장은 <u>8세</u>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다.

### ⑥·⑦ (생 략)

제10조(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) 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조사·질문 등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(5)
-
<u>1</u> 8세
⑥·⑦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
방법 등) ①
<u>18</u>

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### ② ~ ⑤ (생 략)

제16조(아동수당의 환수) ① 특별
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
장・군수・구청장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
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
여 환수한다.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	<u>.</u>
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	16조(아동수당의 환수) ①
	,
	·
	1. · 2. (현행과 같음)
	3. 보호자가 「아동학대범죄의
	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

	조제4호의 죄를 범하여 형을
	선고받은 경우
<u>3.</u> (생 략)	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